

공급규정

[] 신고서

[]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신고: 10일 변경신고: 7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신고인	상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※ 변경내용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변경 내용	변경 전		변경 후	

시행 예정 연월일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가스공급규정을 []신고 []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고 시 1. 공급규정안 1부 2.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	수수료 없음
	변경신고 시 1. 변경사유서 1부 2.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.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	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확 인	→	결 재	→	통 보
신고인								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)								